

서울특별시 시민청(市民廳) 운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번호	3033
------	------

2025. 9. 12.
문화체육관광위원회

I.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5년 8월 11일, 서울특별시장

나. 회부일자 : 2025년 8월 14일

다. 상정결과 : 【서울특별시의회 제332회 임시회】

-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9.1.)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심사보류
- 제3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9.8.) 상정, 질의 및 답변, 의결(수정안 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홍보기획관 민수홍)

1. 제안이유

- 노후화된 ‘시민청’을 서울의 미래 비전 홍보, 시민 소통, 문화 향유를 위한 복합문화시설로 개편하고, 명칭을 ‘서울갤러리’로 변경함에 따라 시설 운영의 법적 근거 마련 및 행정의 일관성 확보를 위해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설 명칭 변경을 조례 제명과 전체 조문에 일괄 반영

- 제명 변경 : 서울특별시 시민청(市民廳) 운영 및 관리 조례
→ 서울특별시 서울갤러리 운영 및 관리 조례

나. 제2조 : 시설 명칭 변경 및 기능 확대 반영 / 복수 장소 조항 삭제

- 시민참여 · 소통 · 문화체험 공간 → 도시홍보 · 시민참여 · 소통 · 문화체험 공간
⇒ 제8조 및 제14조에서도 서울갤러리 정의와 용어 통일
- 서울시청사 단일 공간 운영으로 변경됨에 따라, 복수 위치 전체를 둔 제2항 삭제
※ 기존 시민청은 시청 · 삼각산 복수 운영

다. 제5조 : 무료이용 대상 조항 현행화(대상자 범위 : 11개 그룹 추가)

- 서울시 문화시설 간의 기준 일관성을 확보하고 이용자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최근 제정·개정된 관련 조례¹⁾의 무료 이용 대상 범위를 반영하여 조정

라. 제10조 : 대관료 감면조항 정비

- 운영자문위원회가 비상설로 운영됨에 따라 대관료 감면 자문 절차 실효성 저하
※ 기존 시민청운영자문위원회에서도 대관료 감면 자문 사례 없었음
-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감면 유효기간(2020년 12월 31일까지) 만료에 따른 정비

1) 서울특별시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및 동대문역사문화공원 관리·운영 조례

마. 제14~16조 : 운영자문위원회의 비상설 운영에 따른 개정

-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의 비상설 운영 원칙을 반영하여 위원 임기, 부위원장 직무, 회의 소집 절차 등 불필요한 조항 삭제
- 제15조 제1항(위원장 직무 조항)은 제14조제4항으로 통합

Ⅲ.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강옥심)

(1) 개정안의 개요

- 동 개정안은 시민청의 명칭을 ‘서울갤러리’로 변경하고, 시설의 기능 확대, 이용료 및 대관료의 감면 조항 정비 등 일부 수정된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하였음.

(2) 시민청(서울갤러리) 운영 경과 및 리모델링 현황

- 서울시청 본관 지하에 위치한 시민청은 2013년 개관하여 2024년 까지 공연, 전시, 교육, 공간대관 등 시민소통 활성화 공간으로 운영되었음.
- 시민청의 방문객 수는 개관 이후 꾸준히 증가하다가 2018년 이후 다소 주춤한 양상을 보였고, 코로나19로 인해 운영일수와 방문객 수가 급감하자 서울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는 시민청 공간·운영 혁신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2022.12.)을 실시하였음.
- 해당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시민청의 문제점은 공간 홍보의 부족, 시민 수요와는 동떨어진 공간 기능, 명확한 콘셉트의 부재 등으로 지목되었으며, 이에 도시모형관을 필두로 한 공간의 전면 개편이 제안되었음.
- 이에 2024년 말부터 약 1년간의 리모델링 공사가 추진 중이며, ‘서울갤러리’라는 새로운 명칭으로 2026년 1월 개관할 예정임.

< 서울갤러리 조성 개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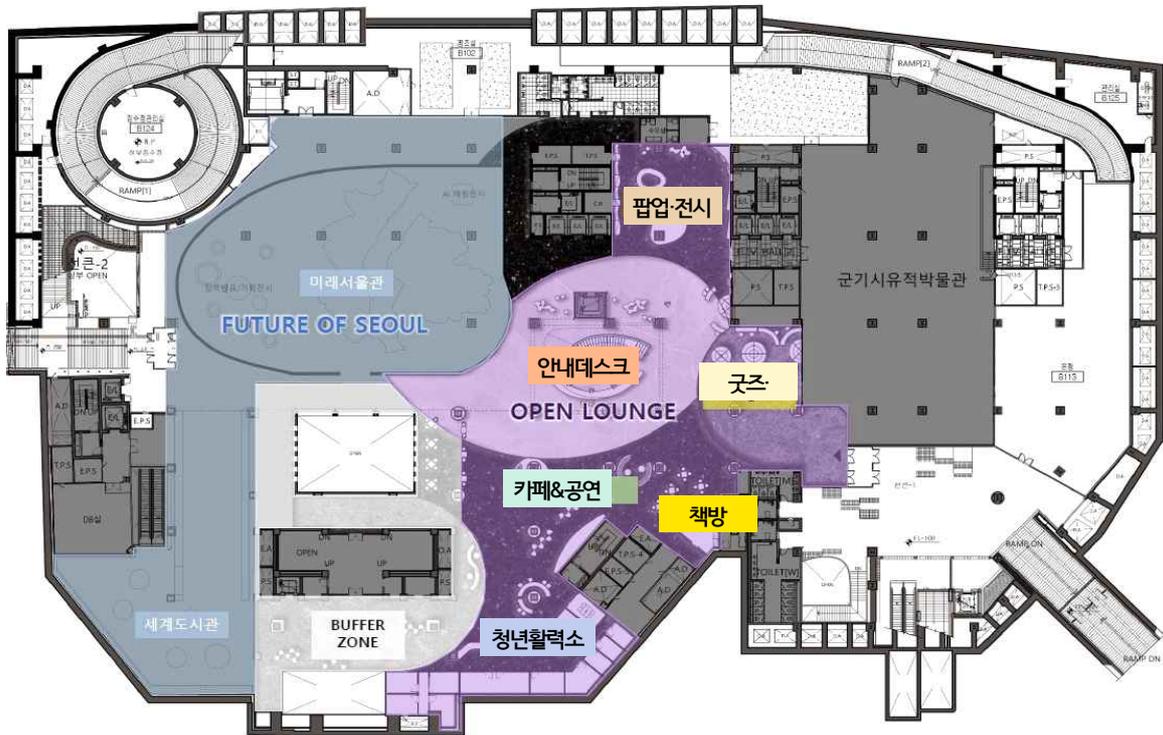
○ 시설 및 사업 개요

- 시설명칭: 서울갤러리
- 위치/규모: 서울시청 본관 지하 1,2층 / 5,514㎡
- 사업기간: 2023.7.~2025.12.(2026년 1월 개관 예정)

○ 주요 공간

- 미래서울 및 글로벌 도시 체험 공간 : 미래서울도시관(미래서울관, 세계도시관)
- 문화향유 및 시민지원 공간 : 팝업·전시장, 공연장, 군기시유적전시관, 청년활력소
- 서울홍보 및 편의 공간 : 서울굿즈, 서울책방, 카페, 안내센터, 휴식공간

※ 지하1층(주요 리모델링 공간)



- 총사업비: 20,891백만원(202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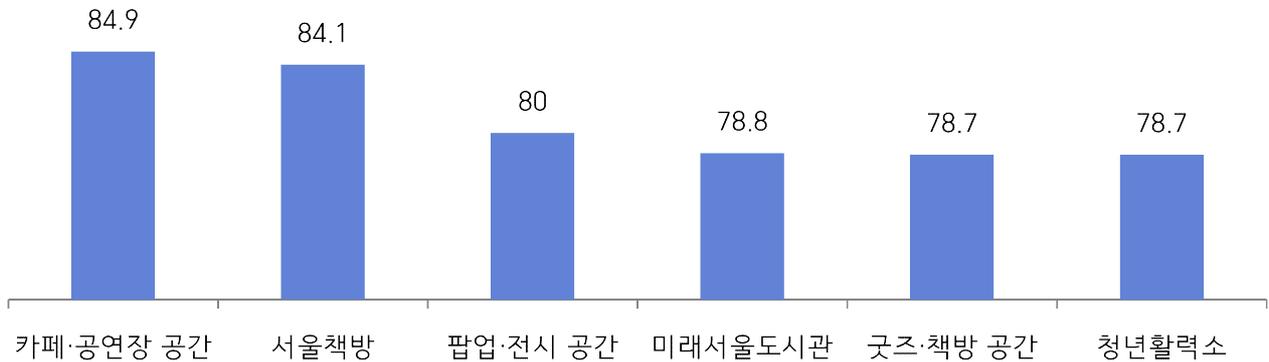
(단위: 백만원)

구 분	구 분	'25년 예산
	총계	20,891
홍보담당관	소계	7,745
	시설비	6,233
	감리비	583
	시설부대비(장비, 물품 구매)	816
	기타(시설부대비, 전산개발비)	113
도시계획상임기획과	시설비(미래서울도시관 전시시설 설치)	13,146

- 다만, 서울시가 2025년 6월에 실시한 「서울갤러리 조성 및 운영 관련 여론조사」에 따르면, 서울갤러리의 조성 자체에 대한 긍정 응답률은 85.8%로 나타났음에도 세부 공간에 대한 호감도는 모두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서울갤러리의 조성 방향성이 시민의 기대에 부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임.

< '서울갤러리 운영 방향성' 여론조사 결과 >

(사례수: 2,000명, 단위: %)



(3) 개정안의 주요내용

① 서울갤러리 명칭 변경

- 동 개정안은 시민청의 명칭이 서울갤러리로 변경될 예정임에 따라 제명을 포함한 조문 전반에 걸쳐 변동 사항을 적용하려는 것임.
- ‘서울갤러리’는 신규 조성 공간인 도시홍보관의 기능을 중심으로 서울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시설이라는 점을 강조하여 서울시에서 제안 및 추진 중인 명칭임.

② 무료이용 대상 확대(안 제5조)

- 안 제5조는 서울갤러리의 무료 이용 대상자를 「서울특별시 동대문 디자인플라자(DDP) 및 동대문역사문화공원 관리·운영 조례」에 따른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서울시 문화시설 간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임.

< 무료이용 대상자 개정 전후 비교 >

무료이용 대상자	개정 전	개정 후
국빈·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및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명	○	○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	○
7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인 사람	△(65세 이상)	○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카드에 등재된 가족 포함)	○	○
서울특별시 명예시민증을 수여받은 사람	○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다문화가족	◎ (외국인주민 포함)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	◎ (가족 포함)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X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X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X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X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X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X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X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해당하는 사람	X	○
학술연구를 목적으로 출입하는 사람	X	○
「서울특별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중 병역명문가증을 소지한 사람	X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중기·장기복무 제대군인	X	○
그 밖에 시장이 서울갤러리(시민청) 운영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

- 다만, 안 제4조에 따라 서울갤러리의 이용료는 원칙적으로 무료이고, 예외적으로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시장이 자체적으로 기획하거나 대관자가 개최하는 행사 등에 대하여 서울갤러리 운영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서 이용료를 정하더라도 2013년부터 지금까지 시민청에서 이용료를 부과한 사례가 단 한 번도 없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조문의 실효성은 매우 낮을 것으로 판단됨.
- 사회적 공헌자에 대한 예우와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를 폭넓게 제공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지만, 실현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이용료 감면 사항을 지나치게 세부적으로 명시하는 것은 조문의 간결성 및 실효성²⁾을 저해하는 과도한 입법 조치로 판단될 수 있음.
 - 특히, 안 제5조제1항제22호에 따라 시장이 이용료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언제든지 감면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모든 경우를 반드시 조례로 명시될 필요가 있는지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함.

③ 대관료의 감면(안 제10조)

- 안 제10조는 대관료 감면을 위해 서울갤러리운영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치도록 규정하였던 현행 조례와는 달리 위원회의 자문 없이도 시장이 대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안 제10조 >

제10조(대관료 감면) 시장은 서울특별시나 후원하거나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2) 국회 법제실, 「법제이론과 실제」, 2019, 81p-95p(법제의 원리와 특성)

- 이는 2013년 시민청 개관 이후로 대관자가 대관료 감면을 위해 위원회 개최를 요청한 사례가 없었고, 일반 시민에게 직접적인 경제적 부담이 되는 이용료와 차이가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임.
- 그러나, 서울갤러리운영자문위원회의 자문 여부와는 무관하게 현행 조문은 시장이 자체적인 판단하에 사용료를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는 재량권이 있다고 오해석될 여지가 있음.
- 서울갤러리는 공유재산의 분류상 행정재산에 해당하고 행정재산의 사용료³⁾ 감면 사유는 상위법령⁴⁾에 제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 법령에서 정한 감면 사유 외에 조례로 새로운 감면 사유를 추가할 수 없으므로 해당 조문을 삭제하는 것을 제안함.

< 조례를 통한 사용료 감면 불가의 근거 >

- 법제처, 「2022년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p.149-150.
 - 법령에서 정한 감면사유 외에 조례로 새로운 감면사유를 추가하거나, 법령에서 정한 범위를 벗어나 사용료를 감경할 수 없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 법제처, 의견제시 사례(의견22-0188)
 - 위 규정(공유재산법)은 원칙적으로 사용료를 징수하되, 예외적으로 같은 법 제24조제1항 각 호로 열거한 경우에 한정하여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3) 「지방자치법」 제153조에 따른 사용료(공공시설의 이용 등에 대한 비용, 조례 규정 가능)과는 구분되는 개념임.

4)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 기타 개별법령에 따라 감면이 가능한 경우가 있음

제24조(사용료의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 22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행정재산을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2.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라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를 받아들이는 재산에 대하여 기부자,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사용허가하는 경우
 3. 건물 등을 신축하여 기부채납을 하려는 자가 신축기간에 그 부지를 사용하는 경우
 4.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2조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를 감경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재난으로 그 재산을 일정 기간 사용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복구 완료기간의 사용료와 그 이자를 일할계산하여 감경할 수 있다.

< 안 제10조의 수정 의견 >

개 정 안	수 정 의 견
제10조(대관료 감면) 시장은 서울특별시 후원하거나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에는 대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삭 제>
제11조 ~ 제19조 (생 략)	제10조 ~ 제18조 (개정안 제11조부터 제19조 까지와 같음)

④ 서울갤러리운영자문위원회의 비상설화(안 제14조)

- 서울갤러리운영자문위원회는 서울갤러리 정책의 방향성과 주요 사업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위원회로, 시민청운영자문위원회가 상설위원회로 운영되었던 것과는 달리 비상설 위원회로 구성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위원회는 2022년도 이후로 위원이 위촉되거나 회의가 소집된 바 없어, 서울시 조직담당관에서 수립한 「2025년 위원회 정비 및 운영 개선계획」에 따른 비상설화 전환 요건⁵⁾에는 부합함.
- 다만, 시민청의 공간 개편이 논의되기 전인 2021년 이전에는 연간 2회 이상의 위원회 개최 실적이 있어, 서울갤러리로의 개편 직후 위원회가 활성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위원회 비상설화가 필수적인 상황은 아니라고 보임.

5) 비상설화 기준: 2024년 1년간 1회 이하 개최되고 최근 3년간 3회 이하 개최된 위원회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질의: ‘갤러리’라는 용어가 미술품 전시·판매를 위한 공간만으로 오해석될 여지가 있으므로, 향후 시민 여론에 따라 명칭을 원점 재검토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할 것임.
- 답변: 시민에게 공간의 의미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홍보와 프로그램 편성에 노력하겠으며, 재검토에 대한 가능성도 열어두겠음.
- 질의: 중대한 결정에 대하여는 시민의 의견 수렴 및 의회와의 소통을 반드시 거쳐주시고 소통 부재가 재발하지 않도록 향후 유의 바람.
- 답변: 앞으로 현안에 대하여 의원님들과 활발히 소통하겠음.

V. 토론요지 : 「없음」

VI. 심사결과 : 수정안가결 (재적위원 10명, 참석위원 8명, 참석위원 전원 찬성)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시민청(市民廳) 운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3033
----------	------------

제안년월일 : 2025. 9. 8.
발 의 자 : 문화체육관광위원장

1. 수정이유

- 서울갤러리(현행 시민청)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상 행정재산으로, 행정재산 사용료에 해당하는 서울갤러리 대관료의 감면 사유는 상위법령에서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상위법령에 명시되지 않은 사유로 대관료의 감면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은 위법의 소지가 있어 삭제하고자 함.

2. 수정주요내용

가. 서울갤러리 대관료 감면 규정 삭제(안 제10조).

서울특별시 시민청(市民廳) 운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시민청(市民廳) 운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4조제3항 중 “제13조”를 “제12조”로 한다.

안 제10조를 삭제하고, 안 제11조부터 안 제19조까지를 각각 제10조부터 제18조까지로 한다.

수정안조문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p>제4조(이용료) ① · ② (생 략)</p> <p>③ 제2항에 따른 이용료는 전시, 공연, 행사 등의 성격·내용 또는 규모에 따라 <u>제13조</u>에 따른 서울 갤러리운영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자문을 거쳐 정할 수 있다.</p> <p><u>제10조(대관료 감면) 시장은 서울 특별시가 후원하거나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u></p> <p><u>제11조 ~ 제19조 (생 략)</u></p>	<p>제4조(이용료) ① · ② (원안과 같음)</p> <p>③ ----- ----- -----<u>제12조</u>----- ----- -----.</p> <p><삭 제></p> <p><u>제10조 ~ 제18조 (원안 제11조부터 제19조까지와 같음)</u></p>

서울특별시 시민청(市民廳) 운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시민청(市民廳) 운영 및 관리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 서울갤러리 운영 및 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갤러리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도모하고, 일반인이 서울갤러리를 이용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서울갤러리”란 도시홍보, 시민 참여와 소통, 문화체험 등을 위해 서울특별시청사에 설치한 복합문화시설을 말한다.
2. “대관”이란 서울갤러리 내 각 공간의 사용을 허가받아 전시, 공연, 행사 등을 진행하는 행위를 말한다.
3. “대관자”란 제8조에 따라 대관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개관 및 휴관) 서울갤러리는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한다.

1. 1월 1일
2. 설

3. 추석

4.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운영상 휴관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날

제4조(이용료) ① 서울갤러리의 이용은 무료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자체적으로 기획하거나 대관자가 개최하는 특정 전시, 공연, 행사 등에 대해서는 이용자로부터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이용료는 전시, 공연, 행사 등의 성격·내용 또는 규모에 따라 제12조에 따른 서울갤러리운영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자문을 거쳐 정할 수 있다.

제5조(무료이용) ① 시장은 제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빈·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4.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및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명
5.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6. 7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인 사람

7.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카드에 등재된 가족 포함)
8. 서울특별시 명예시민증을 수여받은 사람
9.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다문화가족
10.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
11.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2.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4.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5.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16.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 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1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18.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해당하는 사람
19. 학술연구를 목적으로 출입하는 사람
20. 「서울특별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

가 예우대상자 중 병역명문가증을 소지한 사람

21.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중기

· 장기복무 제대군인

22. 그 밖에 시장이 서울갤러리 운영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일정기간을 정하여 무료이용을 실시하거나 대관자로 하여금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이용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용을 금지한다.

1. 다른 사람의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2. 그 밖에 시설물 또는 작품 등의 보호 또는 이용질서 유지를 위해 시장이 이용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행위의 제한) 시장은 이용자가 서울갤러리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퇴관을 명할 수 있다.

1. 흡연, 음주 또는 취식하는 행위

2. 고성 등 다른 이용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제8조(대관허가) ① 시장은 서울갤러리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도시 홍보, 시민 참여와 소통, 문화체험 등에 기여할 수 있는 전시, 공연, 행사 등을 위하여 대관을 허가할 수 있다.

② 대관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대관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사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허가 목적을 위반하거나 대관료를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2. 그 밖에 시장이 이용자의 안전 및 시설물 유지상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대관료) ① 대관자는 사용일 10일 전까지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관자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일 전날까지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대관료는 시설 사용료와 냉·난방 등 부대시설 사용료를 포함한다. 이 경우 냉·난방 등 부대시설 사용료는 도시가스요금 또는 전기요금에 따라서 산출한다.

③ 대관료의 징수·반환 등 회계절차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10조(대관자의 준수사항) 대관자는 사용기간 중 서울갤러리의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11조(손해배상 및 변상조치) ① 이용자가 서울갤러리 시설물 또는 작품 등을 파손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배상하여야 하며, 대관의 경우에는 시설물 또는 작품 등의 관리에 대하여 대관자가 책임을 진다.

② 대관자는 대관 기간에 관리의무를 다하지 않아 서울갤러리 시설 또는

설비가 훼손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제12조(서울갤러리운영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서울갤러리 정책의 방향 정립과 진흥에 관한 사항
2. 서울갤러리 주요 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서울갤러리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회의 개최가 필요할 때마다 구성·운영하고, 위원의 임기는 회의종료와 함께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도시홍보, 시민 참여와 소통, 문화체험 등을 위한 전시, 공연, 행사 등과 관련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소속 시의원
3. 서울갤러리 소관 담당 국장
4. 그 밖에 시장이 서울갤러리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원하는 때

2. 질병, 장기출타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는 때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 업무 소관부서의 담당 사무관이 맡는다.

⑦ 위원회의 구성 등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14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회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15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운영·관리의 위탁) ① 시장은 서울갤러리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무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서울갤러리의 운영·관리를 위탁받은 자는 이용시간, 휴관일, 대관, 이용료 및 편의시설 설치·운영 등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을 정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

다.

③ 서울갤러리의 운영·관리를 위탁하는 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의 사항은 이 조례에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따른다.

제17조(편의시설 설치·운영) ① 시장은 서울갤러리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서울갤러리 내부에 편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하여 타인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